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2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영 미]

목 차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출·세입처리상황	2
5. 일반회계 세입결산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6
9. 계속비 결산	9
10. 예비비 지출	11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13
IV. 기금결산	14
V. 채권액결산	16
VI. 채무액결산	17
VII. 보조금결산	17
VIII. 기타 검토의견	18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4. 5. 30.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4. 5. 31.
- 의안번호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55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56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83,778	990,665	772,309	218,356
일반회계	892,990	897,793	699,782	198,011
특별회계	90,788	92,872	72,527	20,345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983,778	996,395	990,665	674	5,056	100.7	99.4
일반회계	892,990	902,891	897,793	674	4,424	100.5	99.4
특별회계	90,788	93,504	92,872	0	632	102.3	99.3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16,505	167,273	983,778	772,309	170,978	4,694	35,797
일반회계	741,584	151,406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71
특별회계	74,921	15,867	90,788	72,527	11,884	51	6,326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 금	교부 차액	순세 계 잉여 금
계	990,665	772,309	218,356	73,943	55,809	40,749	4,694	3,037	40,124
일반회계	897,793	699,782	198,011	67,324	53,452	37,841	4,643	3,037	31,714
특별회계	92,872	72,527	20,345	6,619	2,357	2,908	51		8,410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4)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계	892,990	902,891	897,793	674	4,424
지방세수입	39,569	42,050	39,970	576	1,504
세외수입	24,162	31,370	28,425	98	2,847
지방교부세	308,243	308,660	308,660	-	-
조정교부금등	33,352	33,552	33,552	-	-
보조금	231,657	234,132	234,132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56,007	253,127	253,054	-	73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84)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71
의회운영위원회	1,137	953	-	-	184
총무위원회	387,785	323,447	51,568	2,640	10,130
산업건설위원회	504,068	375,382	107,526	2,003	19,157

○ 부서별 내역(결산서 p9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71
의 회 사 무 과		1,137	953	-	-	184
총 무 위원회	소 계	387,785	323,447	51,568	2,640	10,130
	기획예산담당관	4,187	3,819	-	-	368
	전략담당관	31,701	15,065	16,247	-	389
	행정과	72,581	69,299	301	6	2,975
	인구교육과	22,587	16,618	4,585	64	1,320
	민원소통과	1,781	1,474	-	-	307
	재무과	11,405	8,117	3,078	-	210
	경제기업과	42,211	26,351	14,853	20	987
	문화관광과	19,013	16,504	1,661	188	660
	복지정책과	22,058	20,878	25	670	485
	행복나눔과	131,977	118,588	10,749	1,460	1,180
	보건정책과	10,513	9,648	-	205	660
	건강증진과	4,090	3,913	69	27	81
	읍 면	13,681	13,173	-	-	508
	산업건설 위원회	소 계	504,068	375,382	107,526	2,003
안전총괄과		11,810	8,835	1,567	15	1,393
산림과		50,255	35,918	11,739	170	2,428
환경과		31,647	29,404	1,391	246	606
건설교통과		129,250	95,711	27,098	8	6,433
도시건축과		70,056	33,610	33,070	83	3,293
농업축산과		31,195	28,260	1,089	385	1,461
농업기술과		58,255	50,293	4,618	1,046	2,298
행복농촌과		41,660	28,098	13,273	12	277
수도사업소		41,140	39,717	1,030	1	392
체육시설사업소		37,061	23,825	12,651	37	548
거창사건사업소		1,739	1,711	0	0	28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22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C)	미수납액 (D=A-B-C)
계	90,788	93,504	92,872	0	632
공 기 업	62,236	63,331	63,075	0	256
의 료 급 여 기 금	1,050	1,056	1,056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30	0	0
주 차 장 관 리	613	1,102	786	0	316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11,050	11,388	11,328	0	60
수 질 개 선	9,789	9,787	9,787	0	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722	1,726	1,726	0	0
농 업 발 전 자 금	4,298	5,084	5,084	0	0

○ 세 출(결산서 p22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F=A-B-C-D)
계	90,788	72,527	11,884	51	6,326
공 기 업	62,236	48,654	8,884	-	4,698
의 료 급 여 기 금	1,050	1,030	0	5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0	0	0
주 차 장 관 리	613	333	0	0	280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11,050	9,009	2,000	0	41
수 질 개 선	9,789	9,728		46	15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722	710	1,000	0	12
농 업 발 전 자 금	4,298	3,033	0	0	1,26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03)

이 용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06)

전 용(일반회계) - 결산서 p30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8건	981	76	76	

이 체

- 일반회계(결산서 p30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00건	65,243	65,243	65,243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결산서 p324)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1건	479	479	479	

-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결산서 p32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7건	11,192	11,192	11,192	

검 토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전용은 총 8건이며 예산액 981백만원 중 7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 전용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함에 그쳐야 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8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이 체

- 예산 이체는 218건, 76,914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0건에 65,243백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1건에 479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1,192백만원임
- 이체 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또는 업무 이동임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126)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18건)	69,942	29,268	40,524	150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2,622	2,341	206	75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14,679	5,588	9,091	0
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전환사업)	3,590	602	2,988	0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전환)	3,361	885	2,476	0
백두대간 거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전환사업)	368	367	0	1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2,608	126	2,474	8
산림레포츠파크 지역특화형 숲속의집 조성사업(기초계정)	1,200	1,192	0	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전환)	1,596	83	1,513	0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9,401	115	9,286	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1,748	343	1,347	58
신활력플러스사업	5,455	2,140	3,315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2,460	1,360	1,100	0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4,219	743	3,476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마리면)	285	85	200	0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6,250	5,684	566	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거창읍)	603	112	491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285	82	203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212	7,420	1,792	0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18건에 29,268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건에 21,848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7,420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8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330)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21건	6,218	4,221	912	1,085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3	3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2	12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97	197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168	1,168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0	1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370	37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93	93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22	22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40	4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08	108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90	90	0	0	
안전총괄과	재해대비	소규모 재해해소	133	133	0	0	
산림과	산림생태 보호	7.9.~7.19. 호우피해 재난복구	1,294	64	596	634	
건설교통과	소규모 지역개발	호우피해 재난복구	937	879	34	24	
건설교통과	하천 정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393	0	282	111	
농업축산과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195	189	0	6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330	165	0	165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도비)	597	593	0	4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 복구지원(도비)	34	33	0	1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6월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29	27	0	2	
농업기술과	농산물마케팅고도화	공동선별공동계산 지원	163	25	0	138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21건에 6,218백만원이며, 그 중 4,221백만원을 지출하고 912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5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건정책과의 공립요양병원운영은 군 직영에 따른 지출이며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지출은 호우 피해와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검토됨.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153)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306	596,090	170,978	
명 시 이 월	106	231,704	73,943	일반회계 94건 맹주변지역특 1건 상수도특 7건 하수도특 4건
사 고 이 월	164	281,097	55,808	일반회계 154건 산업단지 1건 상수도특 6건 하수도특 3건
계속비이월	36	83,289	41,227	일반회계 32건 산업단지 1건 하수도특 3건

※ 지난해 이월사업 : 355건, 167,273백만원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V 기금결산(결산서 p352)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9종)	148,624	△54,091	4,173	58,264	94,533
식 품 진 흥 기 금	134	△1	50	51	133
중소기업육성기금	5,676	△539	100	639	5,137
사 회 복 지 기 금	2,465	59	91	32	2,523
재 난 관 리 기 금	3,400	84	796	712	3,484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2	11	15	4	513
옥외광고발전기금	578	△242	66	309	336
체 육 진 흥 기 금	1,103	0	17	17	1,1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4,766	△53,930	2,570	56,500	80,836
고 향 사 랑 기 금	0	468	468	0	468

검 토 의 견

- 2023년 고향사랑기금이 신규로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48,62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173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8,264백만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533백만원임.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감소액이 539억원인데 신규 대형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정 충당으로 보여짐.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름예술제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556)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260	3,078	2,639	4,699
일반회계	2,728	78	304	2,502
특별회계	1,522	3,000	2,325	2,197
농업발전기금	1,522	3,000	2,325	2,197
기 금	10	0	10	0
사회복지기금	10	0	10	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60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78백만원이 발생하고, 2,640백만원이 소멸하여 439백만원이 증가한 2023년도말 현재액은 4,69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0백만원, 보증금채권 133백만원, 융자금 채권 4,532백만원, 기타채권이 34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 융자이며, 기타채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377)

- 거창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0원임.
- 2018년도 이후로 채무가 0원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38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85,849	388,320	306,421	67,270	14,629
일 반 회 계		376,466	378,937	297,071	67,270	14,596
특 별 회 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	30	30	0	0
	의료급여기금	170	170	166	0	4
	수질개선	9,183	9,183	9,154	0	29

검 토 의 견

- 202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88,320백만원으로 예산액 385,849백만원이고, 집행액은 306,421백만원, 이월액 67,270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629백만원임.
- 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준비부담액은 144,80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37.3%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음.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3년도 총 세입액은 1,143,462백만원, 총 세출액은 830,57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312,889백만원임. 세입대비 27.3%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

- 총 세입은 1,143,4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백만원이 감소하였 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308,659백만원(34.3%)이고, 보조금 234,132백만원(26.0%), 조정교부금 33,553백만원(3.73%), 지방세는 39,970백만원(4.5%), 세외수입은 28,425백만원(3.2%)으로
-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7.6%)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4.2%)의 비율이 8배 가량 높음.
- 세출은 830,5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095백만원이 증가하였 으며,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157,919백만원, 사회복지 147,475백만원, 국도 및 지역개발 70,645백만원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교육(47%), 문화관광 (34%)분야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4,53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173백만원임.

-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당해년도 조성액은 4,173백만원이고, 사용액은 58,264백만원으로 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54,091백만원이 더 많으며,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체 1,270건 675백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 보류하였으나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 이유가 대부분으로 대체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2%로 매우 양호하며 특히,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그 비율이 95.1%로 수납 비율이 양호하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비교해 볼 때 순 수납액 비율이 90.6%로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징수율이 74.6%로 매우 저조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함.
- 2023년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등 29건 415백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거창군에서 수립한 성과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목표 24개, 정책사업목표 79개 추진을 위한 217개의 정책(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지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
-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특수·역점·현안사업은 반드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9개 예산사업 중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 플랜 수립 등 9개 사업은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유형	사업명	비고
1	인구교육과	현안·역점	미래교육도시 거창마스터 플랜 수립	
2	경제기업과	신규·특수	거창군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3	경제기업과	현안·역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	문화관광과	현안·역점	가북면 용산숲~우혜마을 트레킹길 조성사업	
5	복지정책과	현안·역점	에코워싱(ECO WASHING) 일회용품 이젠 그만!	
6	안전총괄과	신규·특수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7	산림과	신규·특수	가로수 테마전정 시범사업	
8	행복농촌과	신규·특수	건강한 청소년 식생활 문화 조성	
9	거창사건사업소	현안·역점	방방곡곡 거창사건 역사공감 홍보	

-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성과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변경하는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217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25개, 초과 달성이 24개 확인되었음
-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기 바람.